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영 등 포 구

사회복지과



동영상



목 차

- I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 II . 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

1.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1. 도입의 필요성

1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 평균연령 : 78.6세(2005년)
81.5세(2020년)

2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 월 100~250만원
-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장기요양보험

필요

3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 의료비 증가**

-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조치 (요양병원 급증)

4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 수발의 한계**

- 가정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2.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 노인인구 매년 20만명이상 증가

	2006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65세이상 비율	9.6%	10.9%	15.7%	24.1%	37.5%

	7% (2000년) → 14%(2018년)		14%(2018년) → 20%(2026년)	
고령인구 증가속도 (65세이상비율)	18년 (프랑스115, 독일40, 일본24년)		8년 (영국 44, 미국16, 일본 12년)	

❖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노인 부양부담

2005년 : 8명당 노인1명 → 2050년 : 1.4명당 노인 1명

II. 장기요양보험 제도 체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신청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자는 '08년 16만명, '15년 20만명이 될 전망

급여대상자

6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은 국민

1-1. 우리구 현황

우리구 노인인구
36,469명



장기요양등급신청자
1,522명

※ 우리구 장기요양등급신청자 1,522명 中
('08.7.10 현재)

판정완료 : 1,029명

(1등급:397, 2등급:247, 3등급:225, 등외:160)

조사중 : 493명

2. 보험료 및 재원조달

재원조달

=

장기요양
보험료(53%)

+

국가부담
(37%)

+

이용자 본인
부담(10%)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4.05%)

국가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본인부담**

- 시 설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 재 가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국가/지자체 부담)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분의 50 경감

3. 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등급판정 (1,2,3등급)

[공단지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재가, 요양시설]



통지 (등급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현물급여 원칙 [현금급여 - 예외적 인정]

-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급여
-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급여 제공
방문간호	의사 등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급여 제공
주·야간보호	지역사회의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단기보호	단기간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
기타 재가급여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2) 시설급여 (2종)

-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9인의 노인이 지역사회 소규모 주택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

3)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월 150,000원**
 -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가족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
- **요양병원 간병비(추후 시행)**
 -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입원시 간병비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추후 시행)**
 - 수급자가 미지정 시설 이용시 지급(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5.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1

재가급여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단위 : 원)

등급	월한도액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반 (15%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7.5%부담)	국민기초수급권자
1등급	1,097,000	164,550	82,275	면제
2등급	879,000	131,850	65,925	
3등급	760,000	114,000	57,000	

2

시설급여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단위 : 원)

시설급여	등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20%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10%부담)	국민기초 수급권자
· 노인전문요양 시설 ·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1등급	1,443,600	288,720	144,360	면제
	2등급	1,306,500	261,300	130,650	
	3등급	1,169,100	233,820	116,910,	
· 노인요양시설	1등급	1,149,300	229,860	114,930	면제
	2등급	1,009,800	201,960	100,980	
	3등급	870,600	174,120	87,060	

6. 장기요양 비급여 사항

이용자 실비부담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1,2인실 사용료
-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교통비
-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 소요비용

7.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 (급여비용 20% + 식비 포함)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3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08년 1,543개소



감사합니다